



의사출신 변호사 이용환 辯護士

[Http://www.legalexpert.co.kr](http://www.legalexpert.co.kr)

Tel. 02) 3355-7000 | Fax. 02) 6280-7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699-16번지 동헌빌딩 7층

의료사고와 해당 판례고찰 (수혈 측면)

1. 수혈

수혈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널리 알려진 약품을 투약 하거나 치료 방법을 환자에게 사용할때와는 달리 흔히 부작용등 악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수혈은 가능하면 수술전에 채혈한 자기혈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혈액형의 확인등 수혈시 주의사항에 따라 수혈 한다.

2. 수혈에 따른 주의사항

수혈을 하여 혈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혈액이 수혈하기에 적합한 것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즉 공혈자의 혈액형,기왕증을 조사하고 매독,혈청감염,AIDS등의 병원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혈에 적합한 혈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혈액을 공급받아 수혈할 경우에는 혈액형검사의뢰 및 수혈혈액요청하고 혈액형검사,항체 선별검사 및 교차시험은 의사,임상병리사에 의하여 수행하며 검사과정 및 결과보고시에 오류가 생기 않도록 주의한다. 의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환자 본인의 성명, 연령 및 혈액형을 구두로 질문하여 수혈될 혈액과 환자의 인적사항 및 혈액형이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후 수혈혈액을 주입하여야 하며 수혈시작후 안전수혈이 확인 될때까지 수혈부작용유무를 관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하여야 한다. 수혈시 극소량으로부터 서서히 수혈하여야 하며 환자의 반응을 감시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3. 관련판례

■ 판례 1

수혈 받은후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면 혈액공급자인 대한○○○사의 업무상 과실책임이 있다. 수혈을 받은 사람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절망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한 경우 채혈당시 혈액관리법상 에이즈검사 실시의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국민들에 대한 관계에서 혈액의 안정성확보에 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한○○○사는 혈액의 공급자로서 채혈당시에 에이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업무상과실 책임을 면할수 없다.

■ 판례 2

의사는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수혈에 직접 입회하여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만일의 부작용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의사가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투약 또는 치료 방법을 사용할 때와는 달라서 흔히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

수혈을 함에 있어서는 혈액형의 일치여부는 물론 수혈용 혈액의 완전성여부를 확인하고 수혈 도중에 있어서는 의사가 직접 입회하여 극소량으로 부터 서서히 사용 하는등 세심한 주의를 하고 환자의 반응을 감시 하여 부작용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 하는등 조치를 하고 불의의 위험에 대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할 준비를 갖추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다.(대법원1964.6.2선고 63다804판결)

■ 판례 3

교통사고로 사망한자가 치료시 수혈을 거절한 경우 수혈거부환자의 과실비율은 50%로 봐야 한다. (서울지법1996.2.9.가단21301판결)

■ 판례 4

대한○○○사로부터 공급받은 혈액을 즉시 수혈하였다면 오염된 혈액인지 여부를 검사하지 않았다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다. 혈액을 채혈한 대한○○○사가 장차 수혈에 사용될 혈액에 대하여 세균감염을 피하기 위하여 채혈후 즉시 밀봉하여 각 병원에 공급하고 위 혈액을 공급받은 병원역시 2차적인 세균감염 위험때문에 혈액의 개봉 즉시 간단한 혈액형검사 및 교차반응검사만을 실시한후 곧바로 환자에게 수혈할수 밖에 없다면 수혈의사가 수혈전에 그혈액이 오염 된 혈액인지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수 없다.(부산지방법원 1990.12.5선고 가합23073판결)